

2026-S학기 조기취업자 공결 신청 안내



교 무 과

1 개요 & 근거

1. 개요 : 재학 중 조기 취업자에 대한 관리 및 출석인정을 함.
2. 근거 : 성적평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성적평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출석 및 공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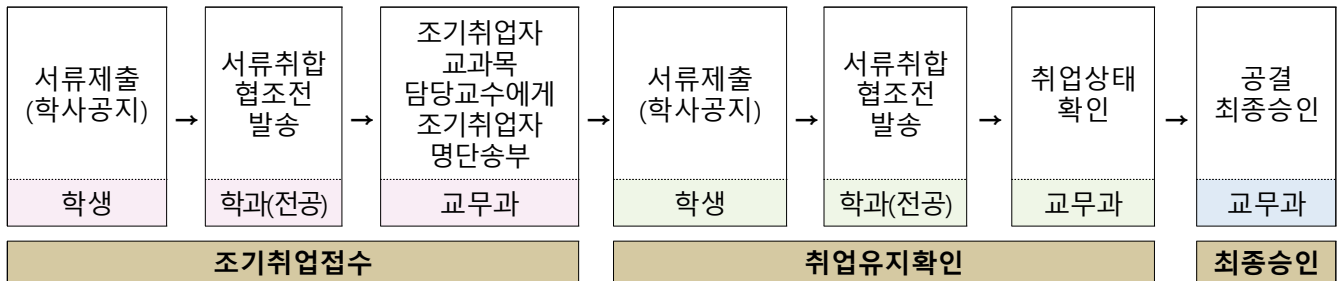
1. 직계존비속의 사망(부모 7일, 자녀 3일, 조부모와 형제자매 3일)
2. 결혼(본인 7일, 형제·자매·자녀 1일)
3.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개정 2025.12.01.)
4.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한 국·내외회합 참석 및 이에 준하는 경우(개정 2025.12.01.)
5. 학생회 임원의 국내·외회합 참석 및 이에 준하는 경우(개정 2018.3.8. 2025.12.01.)
6. 체육·예술 등 관련 대회 및 훈련을 참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개정 2025.12.01.)
7. 질병에 의한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학기당 4주 이내의 범위에서 결석계를 제출했을 경우
8. 교내·외 주요 행사에 참가를 위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18.3.8. 2019.04.11. 2025.12.01.)
9. 조기취업자(4학년)의 해당기간(신설 2016.10.10.)
10. 교육실습 등 정규 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5.12.01.)
11.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 전염병 감염자(신설 2019.04.11.)
12. 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9.04.11.)

2 업무처리 절차

1. 조기취업자 자격 요건

- 가. 대상 : 4학년(7학기 이상) 재학생으로 취업된 자
나. 인정범위 : 4대 보험가입자(4대보험 중 택1)

2. 행정절차



※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서류 미제출시 공결 취소됨

- 조기취업 대상자 : 학사공지 참고하여 제출서류 준비. 교과목 담당교수와 평가 방법 사전 협의 필수.
- 학과(전공) : 학생의 출석인정 요건 지도 및 확인
- 교무과 : 조기취업 접수 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조기취업접수 명단 발송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공결) 기간 및 성적관리

가. 공결인정 기간

- ① 취업으로 인해 수업이 결석처리 된 기간 (입사날짜부터, 재직증명서 확인)
[중도포기(퇴직, 휴직 등) 기간은 출석인정 기간에서 제외]
- ② 학기 중 조기취업된 자는 조기취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전공)에 신고해야 함
[조기포기(퇴직, 휴직 등)된 경우 취업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전공)에 제출해야 함]
- ③ 공결인정 기간은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기간에 4대보험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로 인정기간을 확정함

나. 성적관리

- ① 조기취업자의 취업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서만 공결 처리하며, 중간/기말고사를 시행하고 과제 물도 제출해야 함
- ② 조기취업자의 결석 공결인정에 대해 교수 재량으로 별도의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음
- ③ 교수 재량으로 조기취업자의 시험/출석/과제물 성적 등은 일반학생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취업유형별 제출서류

1. 조기취업 신청기간

내용	신청기간	내용	신청기간
조기취업신청	26. 6. 16.(화) ~ 6. 22.(월)	취업포기신청	26. 6. 23.(화) ~ 7. 2.(목)
조기취업유지신청	26. 6. 30.(화) ~ 7. 2.(목)		

※ 공결 최종승인 기간 : 26. 7. 3.(금) ~ 7. 6.(월)

2. 조기취업 신청 시 유형별 제출서류

가. 조기취업자 신청(접수)

- ① 공통서류 : 조기취업신청서, 조기취업준수서약서(붙임 참조)
- ② 취업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내용
취업자	▷ 재직증명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발급일 1달 이내 ▷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부, 발급일 1달 이내 ▷ 근로계약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단, 공무원 등 임용 또는 위촉 형태로 근로계약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인턴	▷ 합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 재직증명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발급일 1달 이내 ▷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부, 발급일 1달 이내
채용 확정 후 직무관련 연수	▷ 합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 ▷ 연수확인서
해외취업	▷ 고용계약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 비자사본
교육생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발급일 1달 이내

구분			내용
개인 사업자 (창업)	직원 有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
	직원 無 (단독 창업)	일반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매출(입)세금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실적조회서(최근 1개월)
		간이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통장사본 :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최근 1개월)

나. 조기취업 유지 확인 시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 결석계신청서(학생 신청)

② 취업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내용
취업자			▶ 재직증명서 : 증명서 발급날짜(6월30일 이후) ▶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부 ▶ 근로계약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단, 공무원 등 임용 또는 위촉 형태로 근로계약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제외)
인턴			▶ 합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 재직증명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발급일 1달 이내 ▶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부, 발급일 1달 이내
채용 확정 후 직무관련 연수			▶ 합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 ▶ 연수확인서
해외취업			▶ 고용계약서 : 계약서 발급날짜(6월30일 이후) ▶ 비자사본
교육생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6월30일 이후)
개인 사업자 (창업)	직원 有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6월30일 이후(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6월30일 이후 조회)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
	직원 無 (단독 창업)	일반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6월30일 이후(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6월30일 이후 조회) ▶ 매출(입)세금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실적조회서(최근 1개월)
		간이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6월30일 이후(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6월30일 이후 조회) ▶ 거래통장사본 :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최근 1개월)

다. 취업포기 시 제출서류

- ① 대상 : 조기취업 신청자 중 퇴직이나 휴직으로 인한 취업 중도포기한자
- ②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결석계신청서	학생 신청(최종재직일까지 공결인정)
취업포기신청서	붙임 참조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최종재직일자 표기, 회사직인

※ 학기 중 포기기간은 출석인정 기간에서 제외 함

4 유의사항

1. 신청 불가 및 제외사항

- ▷ 신청기간 외 서류접수/행정처리 불가 신청기간 엄수
- ▷ 서류 미충족 시 반송
- ▷ 원격강의는 조기취업 공결인정에서 제외됨

2. 신청학부(과) 및 교원 유의사항

- ▷ 학기초 학부(과)별 조기취업 해당자 파악 후 신청
- ▷ 중도포기(퇴직, 휴직 등) 할 경우 신속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3. 조기취업 신청자 유의사항

-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는 반드시 참여해야 성적이수 가능. 단, 담당교수의 인정이 있을 때는 성적 평가 방법을 달리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
- ▷ 조기취업 확정시 교과목별 교원이 조기취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꼭 담당교원과 면담
- ▷ 위장취업 했을 경우 모든 과목은 F처리
- ▷ 조기취업자는 조기취업신청서에 학부모(보호자) 등의 서명 필수
- ▷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 후 전자출결 공결 최종 승인
- ▷ 모든 제출 서류는 공란 없이 작성